

#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3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3. 31

다. 상 정 일 자 : 2005. 7. 4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환경과장 안태호

나. 제안사유

- 화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문학교 육성과 지역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화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안 제2조)

- 화순군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서 조건이 충족될 때에는 군세 수입의 일부를 교육발전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음.

○ 보조사업의 범위(안 제3조)

- 화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관련 설치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에 사용함.

○ 보조금의 신청 등 (안 제4조)

- 화순군 소재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 게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경비의 사용방법, 효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 함.
- 군수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의 장에게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 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태)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한 조례로서

○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결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토론자 : 박광재 의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참고(전면 수정)

6. 심사결과

“수정 의결”

7. 붙임 :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지원조례안

## 화순군교육환경발전지원 조례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경비 보조기준액)**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에 의거 군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서 화순군 교육발전 사업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될 때에는 군세 수입의 일부를 교육발전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관련 설치사업
6. 농촌 벽지학교 보조 조리사 인건비 지원

**제4조(위원회)** ① 군수는 지역교육의 발전방향과 좋은 학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청 간부 1인
2. 농업협동조합 간부 1인
3. 전라남도 도의원 1인
4. 화순군의회 의원 3인
5. 화순군 관련공무원 1인
6. 교육 관련단체 1인
7. 학부모단체 1인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권위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3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2. 보조금의 신청사업 심의

3. 기타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제10조(보조금의 신청)** ①화순군 소재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보조금의 변경 등)** ①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보조금 집행결과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보조금교부신청서

신청인	①학교명 (학교장)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위 치			
④보조사업의 목적				
⑤보조사업의 내용				
⑥사용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총금액		자부담		보조금액
⑦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⑧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화순군교육환경발전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